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료 징수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유자 등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859호, 2022. 5. 3. 공포, 2023. 5. 4. 시행)됨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은 매년 3월 31일까지 지원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비용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적의 유형별 분류기준에 사찰을 추가하는 등 사적의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9. 5. ~ 10.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최근 3년간 관람객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소유자등은 비용지원 신청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9조제4항에 따

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비용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액수 및 시기를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별표 1의2 사적의 지정기준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2호 라목 중 “절터”를 “사찰, 절터”로 한다.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가. 역사적 가치

1) 시대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난 것

2) 역사적 인물 관련성: 국가에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관련성이 있을 것

3) 역사적 사건 관련성: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것

4) 역사적 발전: 특정 기간 동안의 기술적 발전이나 높은 수준의 창의성 등 역사적 발전상을 보여줄 것

나. 학술적 가치

1) 중요한 정보: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정치·경제·사회·

문화·종교·생활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2) 양호한 증거: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정치·경제·사회·
문화·종교·생활 등을 알려주는 유구(遺構)의 보존상태가 양
호한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 지원신청에 관한 특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지원신청서
를 제출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0조(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 <u>1. 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u> <u>2. 최근 3년간 관람객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u> <u>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지원 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u> <u>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u> <u>③ 소유자등은 비용지원 신청</u>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
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
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49조제4항
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비용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
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9조제
4항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
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에는 지원 액수 및 시기를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 4789